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 징계 및 정관준수 의무 신설 》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94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제220619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 및 건축사협회 정관 준수 의무 신설(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2

I.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제220619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

다. 회 부 일 : 2024. 12.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3. 검토의견

가.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 및 건축사협회 정관 준수 의무 신설(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9. · 10. (생략) ② ~ ⑤ (생략)	제30조의3(징계) ① ----- ----- ----- ----- -----제11호에----- ----- ----- 1. ~ 8. (현행과 같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생략) <신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하고(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건축사협회 정관 준수 의무를 신설하여(안 제31조의3제2항) 건축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축사에게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사협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건축사법」¹⁾이 개정되었음(2022. 2. 3. 개정, 2022. 8. 4. 시행). 그러나, 건축사가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의식 및 책임 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익적 성격²⁾이 있는 만큼,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사협회 정관 준수 의무를 「건축사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징계는 불이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³⁾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미 대한건축사협회 정관⁴⁾에 정관·제규정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징계 규정을 갖추고 있으므로(참고자료 1 참조), 개정안의 실익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현행법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협회 가입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징계 규정과 관련된 타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참고자료 2 참조),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규정된 정관준수 의무를 「건축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건축사의 윤리의식 및 직업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라는 처벌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 112)

4)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이하 생략)

제50조(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고
2. 회원 권리정지
3. 제명

참고 1

건축사 징계 및 정관준수 의무 관련 규정(자료: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축사 윤리선언서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제50조(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고
2. 회원 권리정지
3. 제명

참고 2

징계 관련 타법사례(자료: 대한건축사협회)

구분	내용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리사법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공인 회계사법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 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585